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장·화장 신고 수리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·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시신·유골(매장, 화장)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신·유골

[] 매장

[] 화장

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	
사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-	
	주소				
	사망장소	사망사유 사망연월일	. . .	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분묘설치 연월일	. . .		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전화번호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(화장)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의료법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또는 읍·면·동장의 확인서(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)
------	---

제 호

시신·유골

[] 매장

[] 화장

신고증명서

사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-	
	주소	사망사유 사망연월일			. . .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분묘설치 연월일			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전화번호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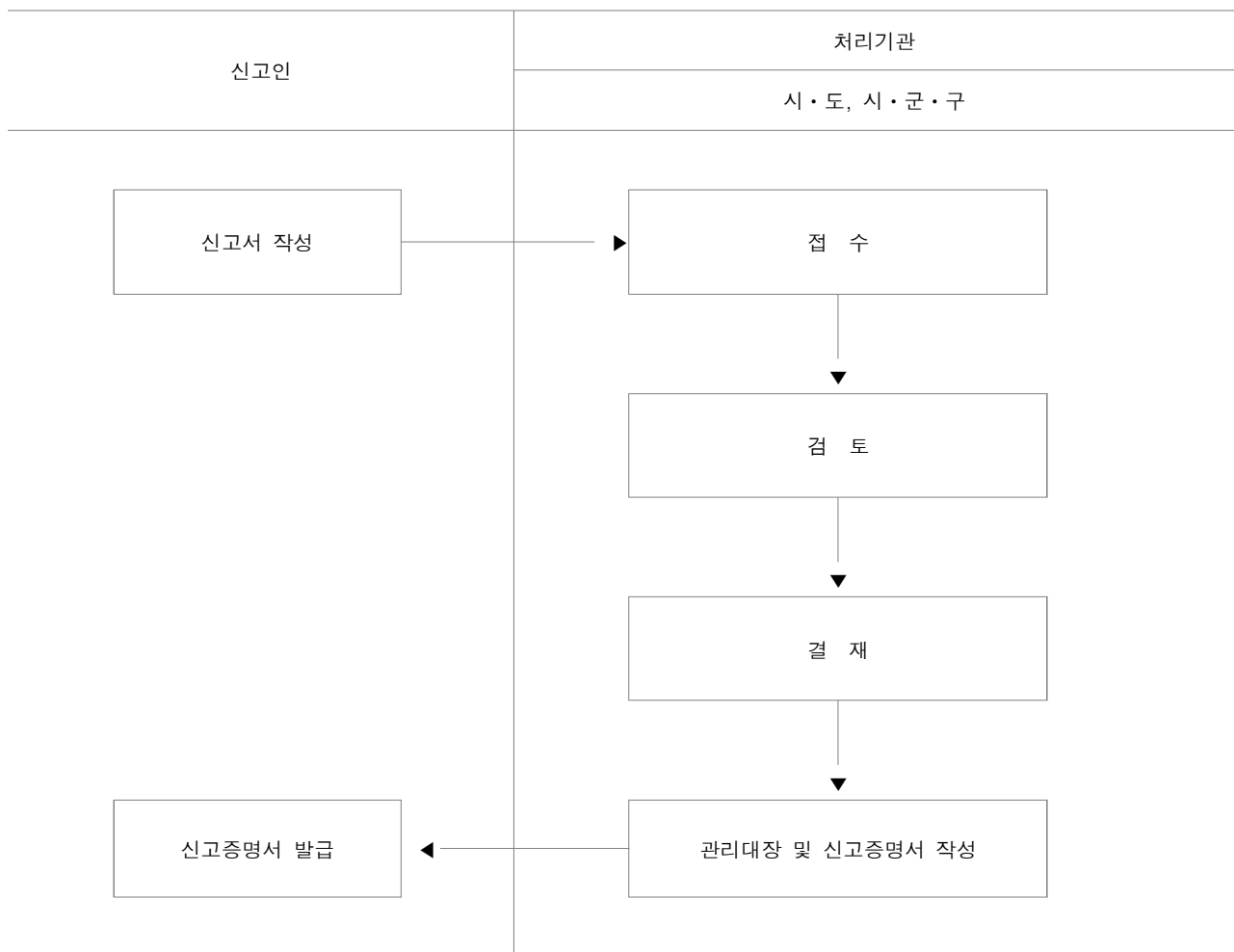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관인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73